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82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김태호 · 윤영석 · 배준영

조경태 • 고동진 • 정동만

서범수 · 박대출 · 김성원

박정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함에 혼란이 있음.

또한, 남한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겪은 이산가족이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남북 이산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 황임.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 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는 남한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1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	
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	
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u>흩어져 있는</u> 8촌	흩어져 거주하고
이내의 친척 인척 및 배우자	있는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	
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u>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재외동포는 남한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